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995호 2026. 4. 28.(화)

차 례

공 고

- | | | |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1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8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8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099호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2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라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운영 기준 및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사용허가 및 사용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2조)
-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사용자의 시설 출입 및 반입물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6,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라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운영 기준 및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5조)
- 나. 사용허가 및 사용방법,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 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16조)
- 라. 사용자의 시설 출입 및 반입물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경제정책과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5-16번지(청라라임로 50)에 둔다.

제3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공연·전시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2. 악기 연주 및 무용 등을 위한 방음공간, 마루공간
3. 주민 간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유주방 및 다목적 휴게공간

4.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 등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및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횟수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구가 사용하거나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 프로그램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동아리 및 단체
3. 서구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경우 단체를 우선한다.

⑤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변경·취소(환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변경·취소(환불) 신청을 받은 즉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설비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판매나 홍보 등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을 행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상습적인 예약 취소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①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 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당일 이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서구 또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

우: 전액 반환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타인 또는 단체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2.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3. 그 밖에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관리 소홀이나 고의·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3.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출입이나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3. 행사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 또는 이를 소지한 사람
4. 화재나 상해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또는 흥기 등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와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사 용 료	기 준	비 고
시설명				
지하1층	동아리실1	4,000	1시간	○ 초과 사용 1시간당 사용료의 100% 가산 ○ 사용시간에는 준비 및 정리(철수) 시간 포함
	동아리실2	2,000		
2층	프로그램실1	5,000		
	프로그램실2	4,000		
	공유주방	40,000		
3층	다목적실	5,000		
	마루공간			
	방음공간 1	6,000		
	방음공간 2	8,000		
4층	다목적실	4,000		
	마루공간	4,000		
	모임공간			

※ 사용료에는 음향시설, 냉·난방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시설도 포함

※ 청소년 전용공간(4층)은 청소년(9세~24세)에 한하여 무료

2. 수강료: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단, 교재비와 재료비는 별도)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10조와 관련)

1.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구분	대상	감면비율	비고
사용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 3.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수강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 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50%	서구 주민에 한정하며, 1인당 제한 강좌 수는 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함 ※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교재비 별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천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30%	

[별지 제3호서식]

청라생활문화센터 수강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	신청자명 (단 체 명)		연 락 처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감면내용	강 좌 명				
	감면 근거	※ [별표 2] 수강료 감면대상 택 1			
	감면 비율				
	첨 부	※ 감면대상 증빙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서명, 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국(군·구)별 의견			
협의개요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98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단구 분구로 인한 구립예술단 운영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술단원의 자격을 명확화하고, 부칙을 제정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단원들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구로 인한 구립예술단 운영 공백 및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술단원의 자격을 명확화하고, 부칙을 제정하여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단원들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적용함(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자격과 위촉) 제5항 중 “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을 “분야별 예술단원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원 자격 및 위촉기간에 관한 특례) 제7조제5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지 및 사업장(학교)이 검단구로 변경되는 기존 단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유지하고 위촉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격과 위촉) ①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u>분야별 예술단원 신청자는</u>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⑥ (생 략)</p>	<p>제7조(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분야별 예술단원은</u>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제물포구	중건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중앙동2가·중앙동3가·중앙동4가·해안동1가·해안동2가·해안동3가·해안동4가·관동1가·관동2가·관동3가·항동1가·항동2가·항동3가·항동4가·항동5가·항동6가·항동7가·송학동1가·송학동2가·송학동3가·사동·신생동·신포동·답동·신흥동1가·신흥동2가·신흥동3가·선화동·유동·율목동·도원동·내동·경동·용동·인현동·건동·복성동1가·복성동2가·복성동3가·선린동·송월동1가·송월동2가·송월동3가 지역과 중건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중건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마전동·당하동·원당동·대곡동·금곡동·왕길동·불로동 지역과 중건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검암동·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1099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4.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예술단원 모집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단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원 자격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또는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단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응모원서 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함(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5월 18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4342,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예술단원 모집 시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단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원 자격인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 또는 사업장(학교)이 구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단원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응모원서 내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추가함(별지 제1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실, 가정보육과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응 모 원 서			
성 명	(한자 :)		사 진 (3.5cm×4.5cm)
주 소			
생 년 월 일	(남 / 여)	연락처	
최 종 학 력			
주 요 경 력			
지 원 부 문			
<p>본인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 ○○○단에 입단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자 :</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p> <p>1. 이력서 1부</p> <p>2.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 1부.</p>			

접수번호 No.	접 수 증		
사 진 (3.5cm×4.5cm)	성 명	(한자 :)	
	주 소		
	생 년 월 일	년 월 일(세)	
	지 원 부 문		
	접 수 자	(인)	

(뒷면)

서구립예술단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구립예술단 단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되며, 관련 업무처리 용도 외에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구립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등
-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구립예술단 응모원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구립예술단 응모원서를 통해 단원 임기 종료 후 2년까지 서구립예술단 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사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상 주소,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	서구립예술단 단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등	서구립예술단 위촉일부터 임기 종료 후 2년까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구립예술단 단원 모집 및 위촉 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오

제공받는 자	인천광역시 서구 등 행정기관, (재)인천광역시서구문화재단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구립예술단 사업 통계수집, 정책 개선 위한 연구 기초자료, 서구립예술단 지원사업 정보제공, 필요시 단원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주소 등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서구립예술단 단원 임기 중 및 임기 종료 후 2년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서구립예술단 단원 자격 여부

서구립예술단 단원 신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단원의 모집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단원의 모집) ① (생 략)</p> <p>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단원의 모집)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소년소녀합창단에 한함)</u></p>